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제132회 정례회를 거쳐 2007년 1월 9일, 부천시조례 제219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부천시에서는 복지, 고용, 주거, 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일부 행정 기구를 개편하였다.

- ▶ 시 본청의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局)명칭을 변경하고,
- ▶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팀, 서비스연계팀, 평생학습팀, 고용안정팀 등 4개팀을 운영하도록 개편하였으며,

- 구청의 경우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과(課)명칭을 변경하고 일부팀 신설 및 팀 명칭을 변경하였고,

- 동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세대 이상이면서 조정인력이 11명 이상인 7개동에 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다.

-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 이번 개정안에서도

- ▶ 현행 조례상의 국(局)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 명칭이 변경된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 ▶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위해 국 명칭이 변경 조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을 기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심사 의결되어 **원안의결** 되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
의결 년월일	2007.1.23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17 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007. 1. 9, 부천시조례 제 2193호) 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局)명칭이 변경 조정된 행정기구에 대해 종전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하도록 변경 조정함. (안 제3조제2항제3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행정복지위원회 : 총무국, <u>복지국</u>,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주민</u> <u>생활지원국</u>----- ---</p> <p>4. (현행과 같음)</p>